# 김포시 통·리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| 의 안 번 호 | 제2802호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2021. 07. 08.
제 출 자 김 포 시 장

## 1. 심사경과

❍ 본 안건은 2021년 07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❍ 지역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른 모호한 행정리 간 경계를 주민들이 실질적 생활권으로 인식하는 구거 등 자연 지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

❍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관할구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❍ 고촌읍 풍곡2리와 풍곡3리, 신곡8리와 신곡9리 경계 조정

❍ 양촌읍 학운2리와 학운3리 경계 조정

❍ 구래동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

- 공동주택 명칭 변경 : 구래3통, 구래6통
- 행정통 관할구역 조정 등 : 구래13통, 구래32통, 구래33통, 구래34통, 구래35통

## 4. 검토의견

❍ 본 안건은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 변경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